

세법학 2부

【문제 1】 세무법인 A의 고객 甲과 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아니며, 고객 丙은 甲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다. 본인이 세무법인 A의 소속세무사라고 가정하고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관련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 물음 1) 甲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내용(단, 해당 조문의 단서는 제외함)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16점)
- 물음 2) 甲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시오. (7점)
- 물음 3) 乙은 甲에게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경우 ① 乙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의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내용(대손세액 공제시점, 외상 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처리, 절차규정)을 설명하시오. ② 甲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대손세액의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가 폐업하기 전에 乙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甲의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7점)
- 물음 4) 丙의 甲에 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하시오. ② 용역을 제공받은 甲이 해당 용역을 (가)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나)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거래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③ 甲이 丙에게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그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 (1) A 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국내에 제조공장을 두고 담배를 생산하는 담배회사이다.
- (2)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가격이 인상되었다.
- (3) A 법인은 제조공장 근처에 소재한 B 회사 소유의 비보세(非保稅) 외부창고(이하 'B 회사 외부창고')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한 후,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조생산한 담배 300만 개비를 동 창고로 입고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4) A 법인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구매주문이 들어오면, B 회사 외부창고에 축적된 담배 300만 개비를 A 법인 소유 보세창고(이하 'A 법인 보세창고')에 재입고시킨 후 재조합 또는 재포장하여 도매상 등에 모두 판매하였다.
- (5) 과세관청은 2016년 7월부터 A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 법인이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B 회사 외부창고를 이용한 가장(假裝)반출로 담배 300만 개비를 부당하게 축적한 다음, 2015년에 실제로 반출·판매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A 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고지하였다.

물음 1)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에 관한 특례를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구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 부칙에 의하면 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사례 (3)과 (4)의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례 (5)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과세처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내국법인 A는 2018년 7월 甲소유의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乙이 있어서 내국법인 A는 경락대금을 전부 납부한 이후에 乙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6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단, 내국법인 A의 부동산 취득 시 혹은 취득 전·후에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과세경감의 대상이 아니다.)

물음 1) 내국법인 A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부동산 경락취득이 「지방세법」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위 사례에서 내국법인 A의 부동산 취득행위가 「지방세법」의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문제 4】 A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고, 甲은 A가 고용한 종업원으로 내국인인 국내거주자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A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고,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① 운용취지, ② 상시근로자의 임금인상 관련 적용 요건, ③ 정규직 전환근로자 관련 적용 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단,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계산방식 설명은 제외한다.) (10점)

물음 2) 甲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① 운용취지, ② 적용대상자, ③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별 공제액, ④ 월세액의 적용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A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